

설비 구매 및 설치 계약서

이 설비구매및설치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는 전북 익산시 팔봉동 827에 소재하는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다 302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토(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다.

- 개요 -

1. 설비의 명칭 : H2 및 N2 PURIFIER 등 장비 일체(이하 통칭하여 “설비”라 한다)
2. 설비의 특징 : 첨부 사양서 참조
3. 설비의 납품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4. 설비의 납품기일 : 2010년 8월 10일까지
5. 설비대금 : 금이억이천만원(₩22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6. 이행(계약)보증보험금 :
설비대금의 (10)% 금이천이백만원(₩22,000,000)
7. 이행(하자)보증보험금 :
설비대금의 (10)% 금이천이백만원(₩22,000,000)
8. 하자보증기간 : 시운전완료확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첨부 : 1. 제작사양서
2. 견적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이 N2 및 H2 등 장비 일체(이하 통칭하여 “설비”라 한다)를 제작 및 공급, 설치감독(교육 및 시운전 포함)함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설비명세)

“을”이 “갑”에게 제작, 납품 및 설치 완료할 “설비”의 품명, 규격, 사양, 성능, 수량 기타 명세는 첨부 제작사양서와 같다. 단, “갑”은 “설비”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을”과의 협의를 통해 “설비”的 규격, 사양, 성능, 수량 기타 명세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설비의 납품 및 설치)

3.1 “을”은 2010년 8월 10일까지(이하 “설치완료일”, 기한임수)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비”的 납품 및 설치감독 및 시운전을 반드시 완료하여 “갑”이 설비를 운영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을”은 설비를 납품함에 있어 별첨 제작사양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납품시에 매뉴얼 및 설비 안내서 등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설비를 인수 받은 경우 인수증을 작성 “을”에게 교부한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본 인수증의 교부가 설비에 하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아니 한다.

3.3 이 계약에 따른 설비의 운송 중 혹은 “갑”的 점유하에 있는 경우에도 설비에 발생하는 고장, 장애, 하자, 손실 또는 손해 등 모든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단, “갑”的 점유 중 “갑”이 지정하는 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4 “갑”은 “갑”的 사정 또는 설비에 대한 변경, 추가 등을 위하여 “을”에게 설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납품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계약의 해제, 해지, 설치완료일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설비대금 등)

4.1 “갑”은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금이억이천만원(₩2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설비대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동 설비대금은 설비의 제작, 포장, 운반, 보험, 설치감독, 교육 및 시운전 등 기타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을”은 동 설비대금 이외의 일체의 금전을 “갑”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4.2 중도금 : “갑”은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설비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갑”이 이를 서면 확인한 경우(검수 확인서)에 한하여 확인일 익월 25일에 중도금으로 설비대금의 (90)%인 금일억구천팔백만원(W19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을 “갑”的 결제조건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이 설비의 제작, 설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장애나 하자에 대한 “을”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4.3 잔금 : “갑”은 “을”이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제3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설비를 설치 및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 한 후) “갑”이 이를 검수하여 서면에 의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을”(제3자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갑”은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제공한 익월 25일자로 잔금으로 설비대금의 (10)%인 금이천이백만원(W2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을 “갑”的 결제조건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이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을”(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장애나 하자에 대한 “을”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갑”은 “을”이 아래 제19조에 정한 하자이행 보증금의 예치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설비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4 전 4.1항 내지 4.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규정 또는 기타 이 계약상 다른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제, 상계 또는 지급보류 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설비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 1) 이 계약상 “을”이 “갑”에게 지연배상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갑”은 동 배상금액을 설비대금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근거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 2) “을”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인력, 직원, 고용원에 대해 체불 또는 체납된 임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기타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의 완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은 설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갑”은 설비대금으로 “을”的 체불 임금 및 체납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 “을”을 대신하여 지급 또는 납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5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설비대금을 이 계약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재화보,

현장인력의 임금지급, 제반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현장인력 및 현장대리인)

5.1 “을”은 설비의 납품 및 설치 전에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하 “현장인력”)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갑”과의 연락 업무 등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현장대리인은 “갑”的 요청이 있을 시 그 요청에 대응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설비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고 관련자격 소지자이어야 한다.

5.3 현장인력은 “을”的 직원이나 고용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을”은 구성하여야 한다.

5.4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인력이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번 교체된 현장인력이나 현장대리인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현장에 재 투입할 수 없다.

5.5 현장인력 및 현장대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갑”과 고용관계 등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급여, 복리후생, 산재, 제반 보험 등의 제반 인사 관리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5.6 현장인력 또는 현장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 또는 “갑”的 임직원에게 물질적 또는 육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사용자로서 해당 행위자와 연대하여 천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설비감독원)

6.1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설비감독원”)를 임명할 수 있다.

- 1) 설비의 납품, 설치 및 운영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2) 설비의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3) 기타 설비감독에 관하여 “갑”이 지시하는 일

6.2 “갑”은 전 6.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3 “을”은 설비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설비의 납품, 제작 및 설치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갑”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설비자재의 검사)

7.1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할 자재는 KS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일치 되어야 한다. 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에 정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신품의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7.2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갑” 또는 “갑”이 임명한 설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7.3 “을”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제품을 대체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갑”的 선택에 의하여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 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的 부담으로 한다.

7.4 “을”은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설비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7.5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 또는 설비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6 “을”은 현장내에 반입된 자재 등을 설비감독원의 승낙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7.7 “을”은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설비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사급자재 및 대여품)

8.1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자재 등(이하 “사급자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현장 외부로 이동하거나 제 3 자에 대여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오직 이 계약상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8.2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설비의 제작이나 설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을” 소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갑”的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8.3 사급자재 및 대여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的 귀책사유 없이 사급자재 또는 대여품이 망실, 훼손 또는 파손 되는 경우 “을”은 “을”的 책임과 부담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하도급 등의 제한)

9.1 “을”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설비의 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이전, 양도 또는 위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당해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전액을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9.2 “갑”的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 “을”이 제 3 자에게 설비의 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라도 해당 하도급업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여 하도급업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3 하도급업체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을”은 하도급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0.1 “을”은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반 조치(현장인력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제공 포함)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산업재해보험은 “을”이 가입하여야 하고, “을”은 설비의 제작,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현장인력이 “갑”의 사규, 공장 안전규칙, 관계법령 등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10.3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갑”의 재산에 대한 파손, 절취, 분실 등 포함)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즉,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 “을”的 책임 하에 설비와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만약 인명, 재산피해, 붕괴, 도난, 운송 중 사고, 기타 모든 사고 등(“을”的 직원, “갑”的 직원, 행인, 제3자의 인사상 및 재산상 손해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을”이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응급조치)

11.1 “을”은 재해(화재 포함)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2 “갑”은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재해방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응급조치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을”的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부적합한 설비의 설치)

12.1 “을”은 사양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를 한 후 기능에 부합되도록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12.2 “갑”은 “을”이 제작, 납품,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사양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또는 “갑”이 “을”的 이행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 후 “갑”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정할 수 있고, 동 시정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3 조 (검사 등)

13.1 “갑”은 설비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갑”의 대리인 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설비에 대한 중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한다.

13.2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설비의 제작, 반입, 개조, 설치 등을 완료한 후에 “갑”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제반 설비의 제작, 반입, 개조, 설치 완료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및 “갑”이 검수 확인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장애나 하자에 대한 “을”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3.3 “을”은 설비의 납품 및 설치 후에 “갑”的 입회하에 설비를 (30)일간 시운전하여 설비의 하자 유무 및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갑”을 충족시킬 경우 “갑”은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을”에게 발급하며, 이 시점을 시운전 완료라 한다.

13.3 “갑”的 설치완료 확인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불합격된 설비는 즉시 보수 또는 동일 종류의 설비로 대체하여 다시 납품, 설치 또는 시운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을”은 설치완료일의 연장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전술한 구제방법 이외에 “갑”은 시운전에 불합격된 설비를 일체의 책임 없이 “을”로부터 인수함을 거절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치 않는다.

13.4 설비의 설치완료 이전까지는 설비의 고장, 장애, 마모, 파손, 멸실, 훼손 기타 모든 위험은 “을”的 책임으로 한다. 단, “갑”的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3.5 “을”은 “갑”으로부터 설치완료 확인이나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설비의 하자보증 기타 의무의 경감을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13.6 “갑”은 필요한 경우 “갑”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동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갑”이 “을”에게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해당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 (“을”的 보장)

14.1 “을”은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설비에 대하여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14.2 “을”은 “을”이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 설비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을”이 납품한 설비가 상기 제13조의 검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을”의 품질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14.3 “을”은 설비의 설치 및 부대공사에 대한 업무를 “을”이 아닌 제3자가 수주 및 진행하더라도 “갑”이 요구하는 설계, 공정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설비의 소유권)

15.1 이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을”에게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갑”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5.2 “갑”은 설비 납품일로부터 설비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갑”的 귀책사유 없이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혹은 변질되었을 때의 위험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제 16 조 (설비의 하자보증 및 유지, 보수)

16.1 “을”은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갑”이 설비에 대한 시운전완료확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설비의 재료상, 제조상, 성능상, 품질상 하자에 대한 무상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단, 설비의 하자가 “을”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라도 “을”은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이를 보수하는 등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6.2 하자보증기간 중 “갑”的 조업에 차질이 수반되는 설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을”的 책임과 비용으로 “갑”的 선택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설비로 교체하여야 하고, “갑”的 영업 및 기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3 하자보증기간 경과후의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6.4 “을”은 당해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소한 설비의 납품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하자보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 부품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설비 부품을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이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

고,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16.5 “을”은 당해 설비로 인하여 기존 장비의 피해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갑”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의 해태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6 “을”은 설비의 하자수리 또는 대체의 지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예 : “갑”이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비용, 설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 및 영업손해 등)를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법령의 준수)

“을”은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되는 제반 손해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제 18 조 (환경오염방지등)

18.1 “을”은 설비의 설치, 납품 및 운영 중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 환경영영규격인 ISO14001에 의거 “을”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的 환경방침에 따라야 한다.

18.2 “을”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8.3 “을”은 환경관계법령 및 시방서 및 “갑”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갑” 또는 제3자 내지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물론 기타 관련법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행보증 등)

19.1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기 전에 선급금 전액에 대한 이행(선급급)보증보험증권과 설비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증보험증권들의 유효기간은 설치완료일 이후

로 하여야 한다.

19.2 “을”은 설비의 하자보증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갑”, 보험기간을 “하자보증기간”, 보험금액을 설비대금의 (10)%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완료확인서를 제공 받은 사실이 설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을”은 설치완료확인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하자이행보증의무를 부담한다.

19.3 이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불구하고 “을”의 하자이행 보증의무는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하자이행보증의무는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단지 위약벌로써 부과되는 것이다.

19.4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부분을 “갑”이 직접 보수(하도급 등에 의한 보수 포함)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교육)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설비의 조작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책)

21.1 “을”은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장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당하는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클레임을 방어하며 “갑”은 어떠한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2 “갑”的 설비 사용이 제3자의 권리 침해임이 확정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이 합법적으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

22.1 “을”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체결 및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갑”的 영업비밀, 기술정보 및 노하우 기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제반 서류(이

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을”은 현장대리인 및 현장인력에게도 본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현장인력이 “을”과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장대리인 및 현장인력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행위 및 “을”과 관계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을”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써 “을”이 연대하여 “갑”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2 “을”이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거나, 법률의 규정, 법원 또는 정부당국의 명령에 의해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的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공개하기로 한다.

22.3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갑”的 요청이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받은 관련자료 등을 사본을 남기지 않고 “갑”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갑”的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을”이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22.4 본 22조의 규정은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23 조 (지체상금)

“을”이 설치완료일 내에 설치를 납품 및 설치하지 못한 경우 지체 1일당 설치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설치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기간 및 해제, 해지)

24.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당사자간 권리, 의무가 종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24.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설치의 가동 또는 설치가 불가능한 때
- 2) “갑”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4.3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설치완료일을 경과하고도 설비의 납품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해태하여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을”에게 영업양도, 지불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경매 및 이에 준하는 공권력의 처분이 있거나 그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的 자발적·비자발적 파산, 회사정리절차,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그려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현장인력에 대한 임금체불, 각종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의 체납 등이 있는 경우
- 4) 기타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을”的 계약위반, 하자처리, 유지보수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4.4 이 계약이 만료,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설비의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한 미사용 사급자재, 대여물품 및 기타 자료 일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24.5 위와 같이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설비대금은 즉시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4.6 상기 24.3항 내지 24.5항의 규정은 “을”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24.7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불가항력)

25.1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방역상 출입제한 또는 항만봉쇄, 공장

폐쇄, 홍수, 폭풍, 예상되지 않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 제한금지 및 계약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기타 사유를 말한다.

25.2 상기 25.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지체를 한 경우 “갑”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 26 조 (부대조항)

26.1 전체계약 : 이 계약에서 다루어진 사항에 관한 한 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모든 합의, 약정 등은 이 계약으로 대체된다.

26.2 일부무효 : 이 계약상의 각 규정들은 각기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 규정이 무효 또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여타 규정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이 계약상 한 개 또는 수개의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집행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상 허용 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그 규정이 축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한다.

26.3 권리불포기 : “을”의 이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갑”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당해 위반 또는 불이행이나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별도의 이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갑”的 권리포기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6.4 양도제한 : “을”은 이 계약,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26.5 분쟁해결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키로 하되,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26.6 서류제출 : “을”은 설비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위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기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0년 06월 14일

“갑” :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팔봉동 827

대표이사 김 윤



“을” : 주식회사 아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나 302

대표이사 문 상

사업자등록번호 : 133-81-27249

見 積 書

견적No:AT-KT-100113-03

2010년 05월 19일

일금 이억이천구백만원정 (VAT별도)

₩ 255,000,000

등록번호	133 - 81 - 27249		
상 호	주식회사 아토	대표자	문상영 
사 업 장	경기 시흥 정왕 2다 302		
업 태	제조	종 목	반도체장비
TEL	(031)496-7519	FAX	(031)499-3596

DESCRIPTION	규격	Q'TY	UNIT PRICE	TOTAL AMOUNT
H ₂ Purifier	ACA-H-200 (200Nm ³ /hr)	1	₩ 131,000,000	₩ 131,000,000
N ₂ Purifier	ACA-N-200 (200Nm ³ /hr)	1	₩ 124,000,000	₩ 124,000,000
이 하 여 백				
-. 정제 방식 : 촉매/흡착방식				
-. Max. 사용유량 : 200Nm ³ /hr				
-. 정제 가능 불순물 : H ₂ O, CO, CO ₂ , O ₂ 각 1ppb 이하 (단, Inlet Impurities : 5N(99.999%) 이상)				
-. Option 사항 : H ₂ O분석기, Main Flow Meter, Monitoring System (RS422/485) 가격 포함				
-. 보증 기간 : 설치 완료 후 1년				
TOTAL				₩ 255,000,000
납기	8월 20일 이전			
지불 조건	귀사결제조건	최종 NEGOTIATION : 200,000,000원 		
견적 유효 기간	발행일로 부터 15일 이내			
* 비고		* 첨부서류		

Nitrogen Purifier 사양서

MODEL NO.: ACA - N - 200

CUSTOMER : 일진소재산업

2010년 5월 25일

@ COPYRIGHT 2000, ATTO CO., LTD.

Specifications of Gas Purifier

1. 일반적 사양

정제가스	Nitrogen(N ₂)										
SERIES NO.	ACA Series										
MODEL NO.	ACA-N-200										
정제원리	촉매/ 흡착방식(상온흡착방식)										
유량	200 Nm ³ /hr										
Operation	PLC + Touchscreen										
유입가스농도	99.999% 이상 ($\leq 10\text{ppm}$)										
정제능력 (ppb)	<table border="1"><tr><td>H₂O</td><td>$\leq 1 \text{ ppb}$</td></tr><tr><td>O₂</td><td>$\leq 1 \text{ ppb}$</td></tr><tr><td>CO</td><td>$\leq 1 \text{ ppb}$</td></tr><tr><td>CO₂</td><td>$\leq 1 \text{ ppb}$</td></tr><tr><td>H₂</td><td></td></tr></table>	H ₂ O	$\leq 1 \text{ ppb}$	O ₂	$\leq 1 \text{ ppb}$	CO	$\leq 1 \text{ ppb}$	CO ₂	$\leq 1 \text{ ppb}$	H ₂	
H ₂ O	$\leq 1 \text{ ppb}$										
O ₂	$\leq 1 \text{ ppb}$										
CO	$\leq 1 \text{ ppb}$										
CO ₂	$\leq 1 \text{ ppb}$										
H ₂											
Particle size	$\leq 0.1\mu\text{m}$ 1ea 이하										
최대 압력 (kg/cm ²)	10 미만										

2. 보증서

제품의 최종 납품 1년동안 제품의 기계적 기능과 수행능력을 보증합니다.

보증기간동안 당사 책임으로 인한 결점 발생시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설비의 시운전은 당사가 실시합니다.

아래의 사항의 경우 이 보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2.1 보관상 혹은 장비의 부적당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2.2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손상

2.3 다른 제품으로 변환하거나 수리상에서 생기는 손상

2.4 장비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상

3. 정제의 원리

본 제품은 반도체에 적용되는 초고순도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되어져 있스며 흡착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O₂, CO, CO₂, H₂O에 대한 불순물들을 ppb이하로 줄여 줄수 있습니다.

CO, O₂는 흡착column안에 있는 촉매와 반응을 하여 제거되며, CO₂와 H₂O는 흡착제에서 제거 됩니다.

두개의 흡착 column 이 정제와 재생을 교대하면서 지속적인 순도가스를 공급합니다.

정제된 N₂(배출된 온도상태) 역류에 의해 흡착 재생에 이용됩니다.

흡착교대시간은 프로그램 되어져 있습니다.

4. 제품의 구성

정제용 columns, valve, valves, sensors and control un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제품의 특징

고성능 필터와 EP처리된 필터는 non-particle system를 수행합니다.

본 제품은 program logic controller에 의해 전자동적으로 동작합니다.

- 1) 저희 촉매, 흡착방식은 초순도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 2) 상온의 흡착column 안에서 공급가스의 정제가 process 됩니다.
- 3) 두대의 column 교대하면서 지속적인 순도가스를 공급합니다.
- 4) 공급가스의 유량과 상태에 따라 재생주기를 결정합니다.

6. 제품의 세부사항

6.1 GAS 상태

Port	Inlet	Outlet	Regeneration gas
			ℓ/min
Fluid	Feed gas	Purified gas	Purified-self gas
			H ₂ Gas
Flow rate [Nm ³ /h]	200	200	200 slpm / ≤ 3 slpm
Max. Press. [kg/cm ²]	10	10	8
Temp. [°C]	0 ~ 35	0 ~ 35	5 ~ 35

1) 차압 1 kg/cm²이하

2) 공급가스의 최대 동작압력 10 kg/cm² 미만

6.2 정제 & 재생

정제시간	72 hr ~ 96hr
재생시간	34 hours
재생시 heater의 온도	250°C ~ 300°C (Adsorber)
재생 가스	Self-purified gas & H ₂ Gas
재생시 H ₂ 의 유량	3 ℓ/min 이하

1) 정제된 가스의 일부는 재생과정에서 재생 가스로 이용된다.

2) 두개의 column이 정제와 재생을 교대한다

6.3 동작 & Control System

Operation	Full-automatic
Program	PLC based & Touch screen

6.4 Dimension and weight

길이 (mm)	1,800
넓이 (mm)	1,300
높이 (mm)	2,000

6.5 색상 : KPIA (Korean Paint Industry Association) 가 지정한 하얀 아이보리 색상

6.6 Connections

Name	Nominal size	Material	Remarks
Feed gas (Inlet)	40A	SUS 316L EP	Flange
Purified gas (Outlet)	40A	SUS 316L EP	Flange
H ₂ Gas (Inlet)	1/4"	SUS 316L EP	Bulkhead
Vent (Outlet)	1/2"	SUS 316L EP	Bulkhead
Sample Gas (Outlet)	1/2"	SUS 316L EP	Bulkhead
H ₂ O 분석기 (Outlet)	1/4"	SUS 316L EP	Bulkhead
Instrument gas	1/4"	SUS 316L	Swagelok

6.7 Utilities

1) 전력공급

전원방식	AC 220V, 50/60 Hz, 단상
평균소비전력	11 kW
최대전류	50 A

(2) Instrument gas (Air or N₂)

Pressure	70 – 100 psig
Dew point	-40 °C or less

7. Communication & Criterion

Interface	Purify Running
– RS 232C	Bypass Running
– Hardwire(Alarm signal 선택)	Heater On
	Heater Off
	Alarm Event
	Auto Mode Running
	Manual Mode Running
– Monitoring System	RS485을 통한 Monitoring

8. Safety features

- 8.1 Temperature interlocks.
- 8.2 Remote shutdown and fully automated Programmable logic control.

9. Inspection and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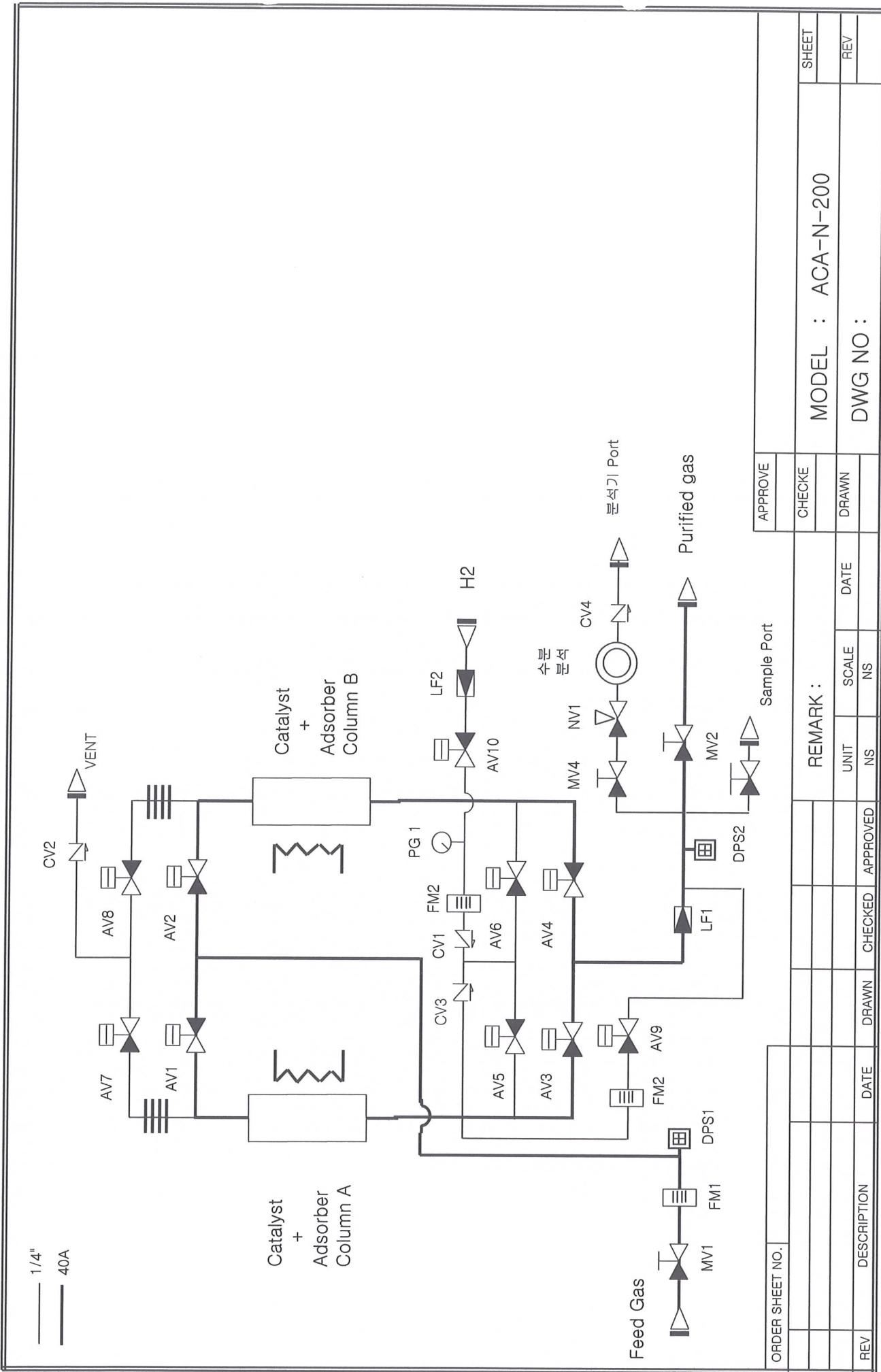
9.1 육안검사 : Dimension and Action test

9.2 가압 test : He gas

9.3 전기 test

9.4 성능 test

H ₂ O	Hycosmo-II, Tracer and Micro dowser, MTO H ₂ O 분석기
O ₂	MK5/Z and Delta-F
Particle	LASAIR-110, LASAIR-101, MIpc-0710 and Met-one



Hydrogen Purifier 사양서

MODEL NO.: ACA - H - 200

CUSTOMER : 일진소재산업

2010년 5월 25일

@ COPYRIGHT 2000, ATTO CO., LTD.

ATTO CO., LTD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 다 302

Specifications of Gas Purifier

1. 일반적 사양

정제가스	Hydrogen (H ₂)				
SERIES NO.	ACA Series				
MODEL NO.	ACA-H-200				
정제원리	촉매/흡착 정제 방식				
유량	200 Nm ³ /hr				
Operation	PLC + Touchscreen				
정제 전 가스 불순물 농도	99.999% 이상 ($\leq 10\text{ppm}$)				
정제능력 (ppb)	H ₂ O	< 1			
	O ₂	< 1			
	CO	< 1			
	CO ₂	< 1			
Particle size	$\leq 0.1\mu\text{m}$ 1ea				
최대 압력(Kg/cm ²)	10				

2. 보증

제품의 최종 납품 1년동안 제품의 기계적 기능과 수행능력을 보증합니다.

보증기간동안 당사 책임으로 인한 결점 발생시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설비의 시운전은 당사가 실시합니다.

아래의 사항의 경우 이 보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2.1 보관상 혹은 장비의 부적당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2.2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손상

2.3 다른 제품으로 변환하거나 수리상에서 생기는 손상

2.4 장비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상

3. 정제의 원리

본 제품은 반도체에 적용되는 초순도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되어있습니다.

공급가스에 포함된 O₂, CO, CO₂ 및 H₂O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제를 사용하여 흡착과정을 수행합니다.

흡착Column에서 H₂O와 CO₂, CO, O₂가 제거됩니다.

자동으로 제어되는 두개의 흡착 Column이 정제와 재생을 교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정제된 초고순도의 가스를 공급합니다.

4. 제품의 구성

정제용 columns, valve, valves, sensors and control un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제품의 특징

고성능 필터와 EP처리된 필터는 non-particle system를 수행합니다.
본 제품은 program logic controller에 의해 전자동적으로 동작합니다.

- 1) 저희 흡착, 촉매방식은 초순도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 2) 상온의 흡착column 안에서 공급가스의 정제가 process 됩니다.
- 3) 두대의 column 교대하면서 지속적인 순도가스를 공급합니다.
- 4) 공급가스의 유량과 상태에 따라 재생주기를 결정합니다.

6. 제품의 세부사항

6.1 GAS 상태

Port	Inlet	Outlet	Regeneration gas
			slpm
Fluid	Feed gas	Purified gas	Purified-self gas
Flow rate [Nm ³ /h]	200	200	200
Max. Press. [Kg/cm ²]	10	10	8
Temp. [°C]	0 ~ 35	0 ~ 35	5 ~ 35

- 1) 차압 1 Kg/cm²이하
- 2) 공급가스의 최대 동작압력 10 Kg/cm² 미만

6.2 정제 & 재생

정제시간 (switch over time)	96 hours
재생시간	12 ~ 18 hours
재생시 Heater의 온도	250°C (Adsorber)
재생시 H ₂ 유량	200 slpm 미만

- 1) 정제된 가스의 일부는 재생과정에서 재생 가스로 이용된다.
- 2) 두개의 column이 정제와 재생을 교대한다
(One line is purification, another is regeneration or wait.)

6.3 동작 & Control System

Operation	Full-automatic
Program	PLC based & touch screen

6.4 Dimension and weight

길이 (mm)	1,800
넓이 (mm)	1300
높이 (mm)	2,000

6.5 색상 : KPIA (Korean Paint Industry Association) 가 지정한 하얀 아이보리 색상

6.6 Connection

Name	Nominal size	Material	Remarks
Feed gas (Inlet)	25A	SUS 316L EP	Flange
Purified gas (Outlet)	25A	SUS 316L EP	Flange
Vent (Outlet)	1/2"	SUS 316L EP	Bulkhead
Sample (Outlet)	1/2"	SUS 316L EP	Bulkhead
H ₂ O 분석기 (Outlet)	1/4"	SUS 316L EP	Bulkhead
Damper	Φ150		열배기

Instrument gas	1/4"	SUS 316L	Swagelok
----------------	------	----------	----------

6.7 Utilities

1) 전력공급

전원방식	AC 220V, 50/60 Hz, 단상
평균소비전력	11 kW
최대전류	50 A

2) Instrument gas (N₂)

Pressure	70 – 100 psig
Dew point	-40 °C or less

7. Communication & Criterion

Interface (RS 232C)	Purify Running Bypass Running Heater On Heater Off Alarm Event Auto Mode Running Manual Mode Running
--------------------------	--

8. Safety features

- 8.1 H₂ 누설감지기
- 8.2 Temperature interlocks.
- 8.3 Remote shutdown and fully automated Programmable logic control.

9. Inspection and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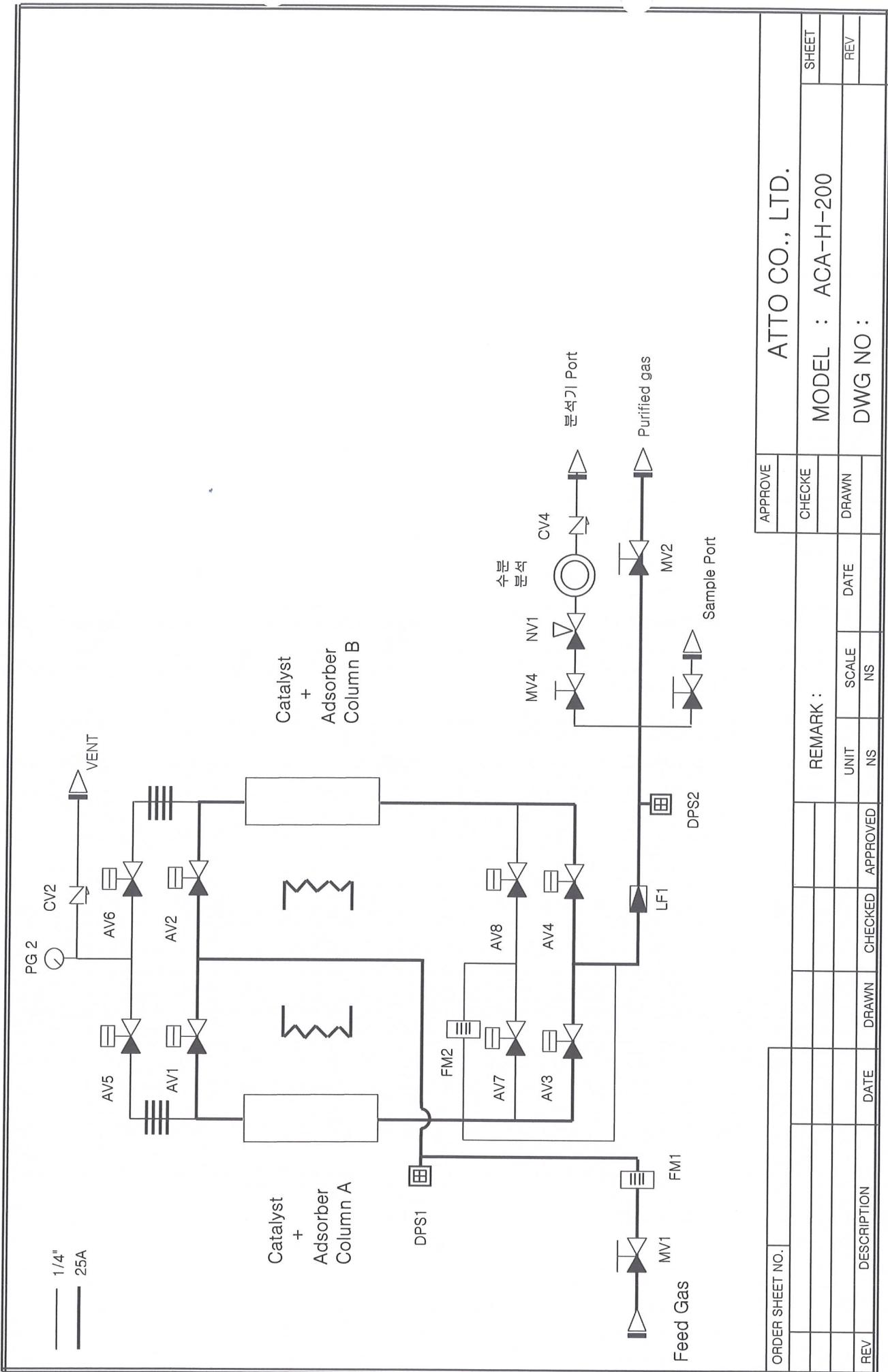
9.1 Observation : Dimension and Action test

9.2 Pressurization test : He gas

9.3 Electrical insulation resistance test :

9.4 Performance test :

Impurities	Analyzer
H ₂ O	Hycosmo-II, Tracer and Micro dowser, MTO
O ₂	MK5/Z and Delta-F
Particle	LASAIR-110, LASAIR-101, MIpc-0710 and Met-one



ORDER SHEET NO.		REMARK :		APPROVE		ATTO CO., LTD.							
REV	DESCRIPTION	DATE	DRAWN	CHECKED	APPROVED	UNIT	SCALE	DATE	DRAWN	CHECKED	APPROVED	REV	SHEET

MODEL : ACA-H-200

DWG NO :